



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8

2018. 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http://transparency.or.kr>



목차

I. 서문 2

II. 감시 - 제도 소개 3

III. 감시 - 현황 및 분석 4

 1. 개괄적 현황 및 분석 4

 2.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및 분석 6

 3.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및 분석 8

 4.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현황 및 분석 10

 5. 인터넷상 압수·수색 현황 및 분석 12

IV.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15

 1. 개요 및 제도 소개 15

 2. 현황 및 분석 18

 3. 주요 이슈 및 최신 문제 사례 24

V. 검열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현황: 제 19 대 대통령 선거 32

 1. 개관 32

 2. 분석 및 통계 33

 3. 문제 사례 37

 4. 결론 38

VI. 투명성 평가..... 39

 1. 감시 39

 2. 검열 41

VII. 맺음말 44

데이터 출처 45



I. 서문

인터넷은 오늘날 장벽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여 소수에게만 편중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유통하고, 이로써 문명과 지식의 발달을 가속화하는 매체이다. 인터넷이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손쉽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은 사회의 각종 불법적 행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인터넷이 가진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터넷 이용을 감시·검열하여야 한다.

정부는 문화의 건전화 혹은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취득하거나 국민의 소통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정보 및 통신 내용을 취득하거나 정보 유통을 과도하게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위험은 늘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행정기관이 사법적 판단 없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 해 10만 건이 넘는 URL이 삭제, 차단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신고만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로도 한해 45만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연간 약 100만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인터넷 감시·검열 현황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황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없다. 즉, 대중이 감시·검열의 규모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국가기관이나 사업자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감시·검열 관행은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역감시를 통하여 정부가 감시·검열 권한을 적절한 범위 내로 조정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2018년판 보고서에서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¹, 2017년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별 문제 사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투명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 외에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한 자료 및 감시 부분에서는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상의 수치도 기초로 하였다.



II. 감시 - 제도 소개

- 수사기관 등 정부가 통신 이용자의 신원정보, 이용내역이나 통신의 내용 등을 감시하는 데에 이용되는 제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 '통신제한조치'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이자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수취하는 통신의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유·무선 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인터넷에 대한 조치인 경우 이메일의 내용, 메신저·채팅 내용, 인터넷 접속, 비공개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의 형식적 사실에 관한 자료(통신 일시·시간, 송·수신번호, 사용도수, 위치 등)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 제공받는 제도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통신을 감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통신기기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유형의 제한 없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 내역, 신원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Ⅲ. 감시 - 현황 및 분석

1. 개괄적 현황 및 분석

구 분 ²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 제한 조치	통신전체 ³	592	6,032	573	6,678	334	6,302	311	6,683	219	6,775
	인터넷전체	401	1,887	372	1,748	179	998	181	899	135	827
	양대사업자	221	556	181	547	75	350	108	193	53	114
통신 사실 확인	통신전체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300,942	5,484,945	303,321	1,585,654	301,257	1,052,897
	인터넷전체	51,367	403,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37,207	93,274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8,224	23,579
통신 자료 제공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504	989,751	6,304,985
	인터넷전체	115,194	392,511	114,260	489,916	100,643	423,533	84,302	312,056	65,151	263,579
	양대사업자	1	17	0	0	0	0	0	0	0	0
압수 수색	양대사업자*	14,408	-	15,684	-	13,183	1,032,033	13,157	722,876	9,538	10,791,104

표 1. 2013-2017 통신감시 현황 개요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을 확인)는 연 평균 406건, 6,494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254건, 1,272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문서수 기준으로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2.5%를 차지하고 있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 평균 286,113건, 6,905,331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37,672건, 138,783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² '인터넷 전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의 통신수단 중 '인터넷 등'에 해당하며, 유선·이동 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사업자(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사업자 기타)가 보고한 수치의 합계이다. '양대 사업자'는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자회사 캠프모바일 포함)와 '카카오'를 의미한다. (단, 압수·수색 부분의 2014년까지의 '계정수'는 카카이가 당시 미집계한 관계로 제외)

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산정 당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재공개한 수치를 반영하여, 지난 보고서의 통계 수치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통신사실확인 의 약 2%(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기지국 수사에 집중이 되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6,114,668건, 2014년 10,228,492건에서 2015년 5,484,945건, 2016년 1,585,654건, 2017년 1,052,89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1,034,036건, 9,539,337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95,910건, 376,319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신자료제공의 약 3.94%(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대량으로 요청 및 제공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전체 인구수의 18.4%에 해당하는 9백 5십 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 상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9,538건으로 10,791,104개의 계정이 조치되었다. 2016년에 비해 사건수는 27% 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계정수는 무려 14.9배 폭등한 수치다. 특히, 이러한 폭등에는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에 무려 6,963,605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권력의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및 분석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3년	-	-	59	81	334	1,798	8	8	401	1,887
2014년	1	1	154	250	213	1,493	4	4	372	1,748
2015년	-	-	29	65	150	933	-	-	179	998
2016년	-	-	26	43	155	856	-	-	181	899
2017년	-	-	31	66	104	761	-	-	135	827

표 2. 2013-2017 요청기관별 인터넷상 통신제한조치 현황

*군수사기관 등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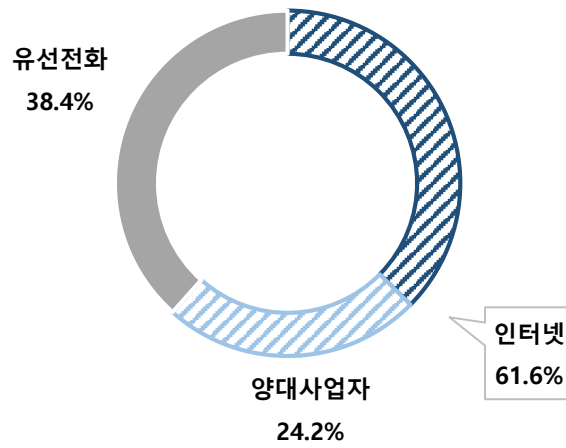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592	6,032	573	6,678	334	6,302	311	6,683	219	6,775	
인터넷전체	401	1,887	372	1,748	179	998	181	899	135	827	
양대 사업자	총	221	556	181	547	75	350	108	193	53	114
	네이버	72	195	56	193	28	127	35	76	16	53
	다음 ⁴	68	272	47	237	39	215	37	81	37	61
	카카오	81	89	78	117	8	8	36	36	0	0

표 3. 2013-2017 통신제한조치 현황 개요

-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 확인)는 2017년 한 해 총 135건의 요청으로 827개의 계정(문건당 계정수 6.12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수단 중 인터넷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주요 통신수단이 인터넷이 되면서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통신의 내용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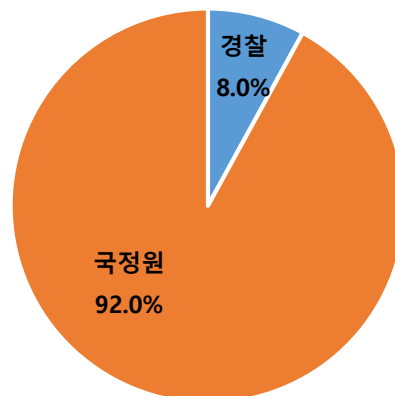
⁴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로, 카카오는 투명성보고서에서 '다음'과 '카카오'의 현황을 분리하여 게시하고 있다. '다음'은 메일,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서비스를,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통신제한조치 중 인터넷 비율 (문서수 기준)



-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약 98.8%는 국정원에 의한 것(인터넷의 경우에는 92%)으로서,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정수 기준)

2017년 인터넷 통신제한조치 요청기관별 비율 (계정수 기준)





3.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및 분석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3년	4,604	310,101	44,866	87,320	273	729	1,624	5,077	51,367	403,227
2014년	3,855	11,374	27,952	51,218	163	293	963	1,836	32,933	64,721
2015년	6,587	16,430	28,776	45,804	197	315	540	2,784	36,100	65,333
2016년	6,254	14,070	24,011	52,469	100	122	388	701	30,753	67,362
2017년	7,975	25,631	28,725	66,170	185	294	322	1,179	37,207	93,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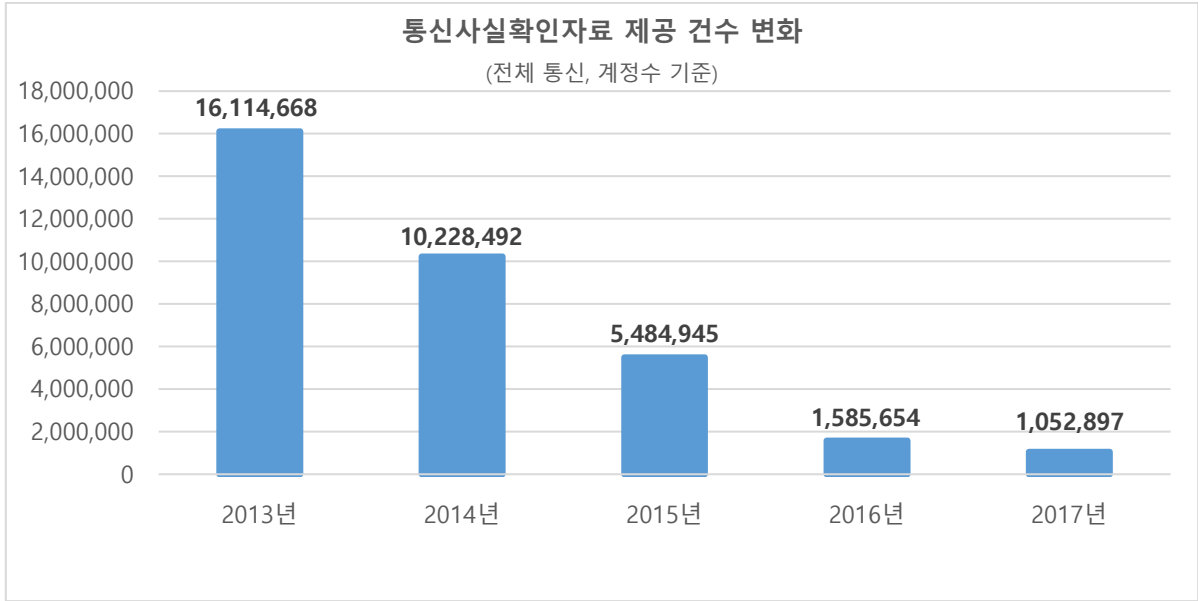
표 4. 2013-2017 요청기관별 인터넷상 통신사실확인 현황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265,859	16,114,668	259,184	10,288,492	300,942	5,484,945	303,321	1,585,654	301,257	1,052,897
인터넷전체	51,367	403,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37,207	93,274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8,224	23,579

표 5. 2013-201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개요

- 2017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총 37,207건의 요청으로 93,274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전체 통신 대비 문서수 기준 약 12.4%, 계정수 기준 약 8.86%을 차지하고 있다.
- 계정수 기준으로,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93,274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양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계정수도 2017년 23,579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종류별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문서수	계정수
통신 내역	272,659	991,19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6,608	20,087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12,447	22,807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접속지(IP) 추적자료	9,543	18,812
계	301,257	1,052,897

표 6. 2017년 통신사실확인자료 종류별 제공 현황 (통신 전체)



4.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현황 및 분석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		합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2013년	19,054	93,662	91,485	280,469	1,548	5,318	3,107	13,062	115,194	392,511
2014년	23,443	143,193	86,469	330,394	1,491	6,498	2,857	9,831	114,260	489,916
2015년	17,796	94,942	79,498	313,140	1,353	9,763	1,996	5,698	100,643	423,533
2016년	12,516	71,619	69,101	230,417	971	3,038	1,714	6,982	84,302	312,056
2017년	9,778	62,064	53,328	194,821	747	2,469	1,298	4,225	65,151	263,579

표 7. 2013-2017 요청기관별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현황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문서수	계정수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504	989,751	6,304,985
인터넷전체	115,194	392,511	114,260	489,916	100,643	423,533	84,302	312,056	65,151	635,795
양대사업자	1	17	0	0	0	0	0	0	0	0

표 8. 2013-2017 통신자료제공 현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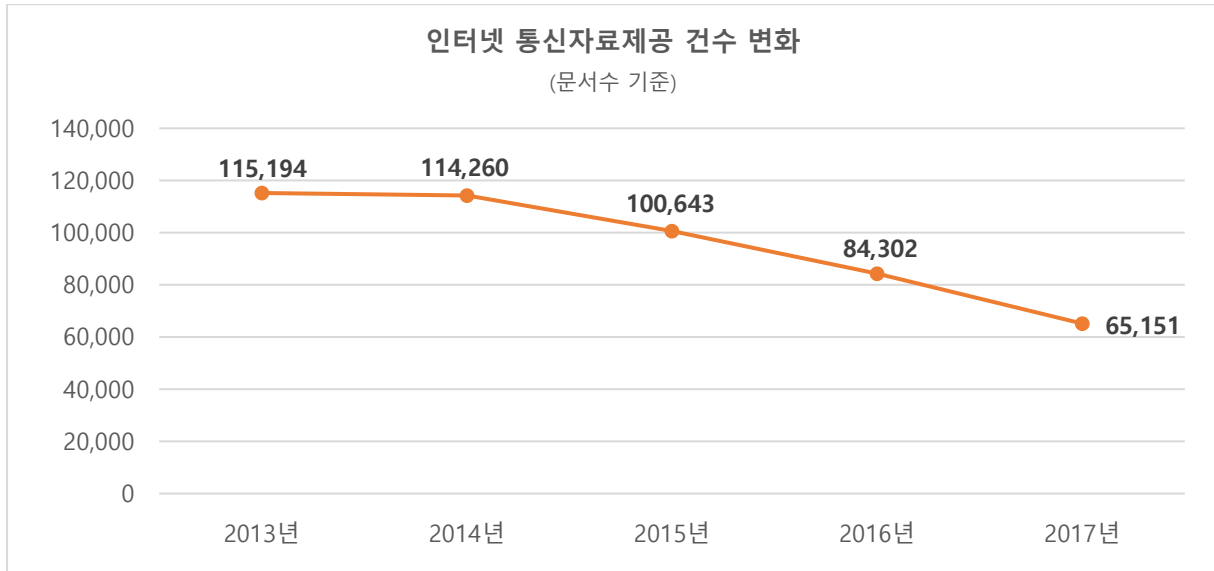
- 2017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총 65,151건의 요청으로 635,795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2016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은 문서수 기준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7년 통신자료가 제공된 계정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이용자의 신원정보 확인이 급증하였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⁵이 2012년에 나온 후, 주요 포털사들은 2013년부터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였다. 비록 2016년 3월 대법원⁶에서 본 판결은 파기되었으나, 양대 사업자들은 이후에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자료제공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간이하게 통신 이용자의

⁵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⁶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신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에 비추어, 양대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판단으로 통신자료제공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 주요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하였으므로, 현재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주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인터넷상 압수·수색 현황 및 분석

-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한 수치에 의존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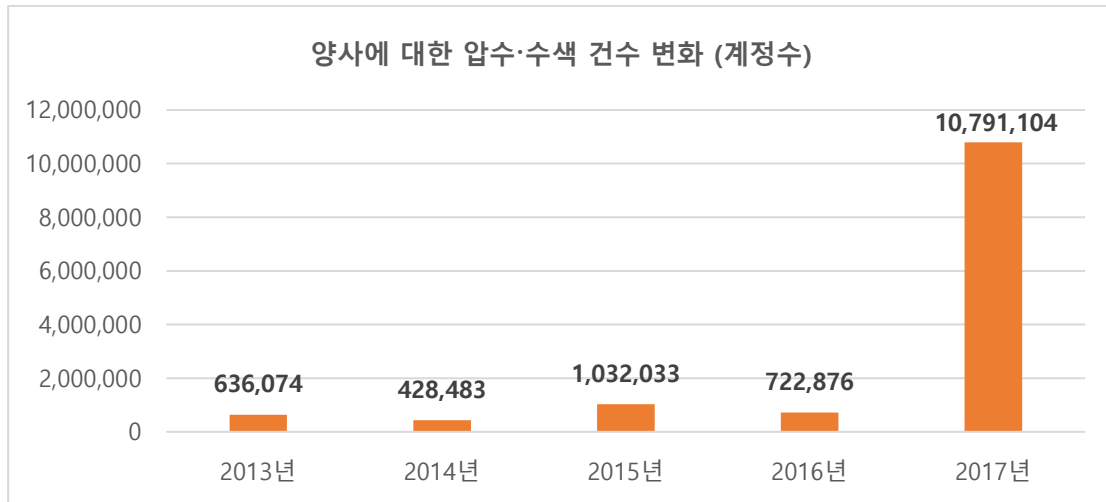
구 분		네이버	밴드 ⁷	다음	카카오	계 ⁸
2013 년	문서수	8,047	-	4,138	2,223	14,408
	계정수	219,357	-	416,717	-	636,074+α
2014 년	문서수	8,188	99	4,398	2,999	15,684
	계정수	76,379	227	351,787	-	428,483+α
2015 년	문서수	7,648	122	3,112	2,301	13,183
	계정수	223,940	10,649	507,124	290,320	1,032,033
2016 년	문서수	6,470	239	2,467	3,981	13,157
	계정수	92,784	15,291	29,633	585,168	722,876
2017 년	문서수	6,541	251	2,168	6,623	9,538
	계정수	10,079,254	13,792	16,104	681,954	10,791,104

표 9. 2013 - 2017 양대 사업자 압수·수색 현황

- 2017년 양대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9,538건으로, 10,791,104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2017년 기준으로, 양대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하여도 23,693개인데, 압수·수색으로 1천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⁷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운영하는 그룹형 소셜미디어 서비스

⁸ '+α'는 2014년까지 미집계되었던 카카오의 계정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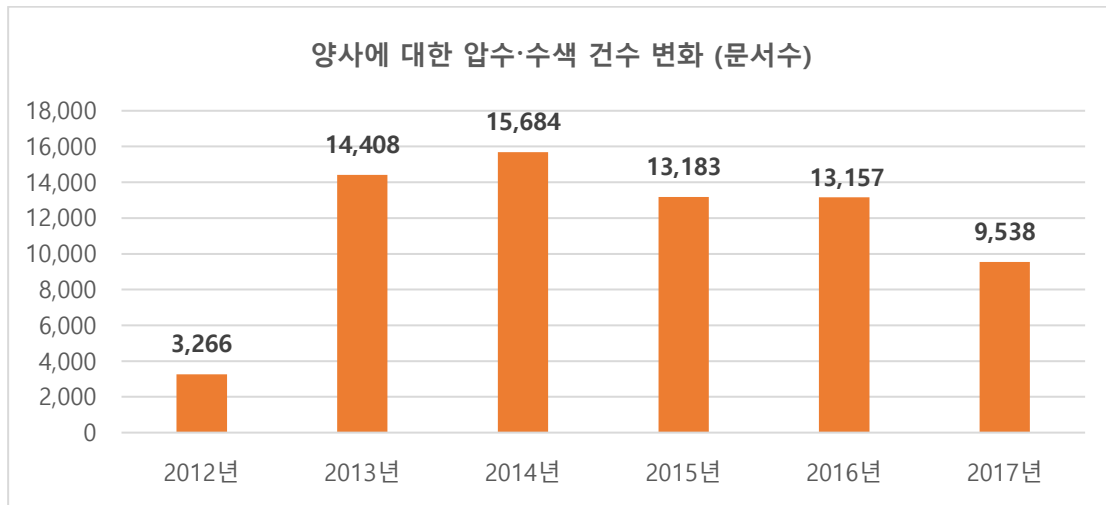


- 양대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수는 2015년 이후 2년 정도 감소하면서 주춤하다 다시 2017년 10,791,104개 계정으로 전년대비 14.9배 폭등했다. 2017년 양사의 압수·수색 통계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공권력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 또한 2017년 양사 통계 기준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가 무려 1,131개로 압수·수색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폭등에는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에 무려 6,963,605개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 2017년 압수·수색 폭등은 대량 홍보메일 발송 등에 사용된 약 7백만 건의 계정 정보가 압수된 1건⁹에 의한 착시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2017), 2018년 상반기 네이버 및 카카오의 압수·수색에 따른 정보제공수가 상반기에 이미 6백 만 건(9천 개 문서)을 초과해 기간별 정보제공수가 2017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규모 증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매크로 사용 등 최근 등장하는 이슈로 인한 압수·수색 방식의 대량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⁹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찬 후보 측이 선거전 사용자 동의 없이 수 천 만 건의 이메일 주소를 불법 수집업체로부터 구입해 대량의 홍보메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 김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관련기사: "김민찬 전 대선후보측, 이메일 대량 구매해 활용했다 '덜미'". 연합뉴스 2017년 5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5/0200000000AKR20170525197300004.HTML>)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양사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는 2013년 들어 전년도 대비 3배 가량 급격히 증가한 이후 비슷한 건수를 유지하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중단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압수·수색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 압수·수색수의 폭발적 증가는 공권력의 압수·수색 사용이 단순히 이용자 신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터넷 감시에 있어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IV.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1. 개요 및 제도 소개

가. 개요

정부가 인터넷상 '정보'(contents, 즉, 정보통신망상에서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¹⁰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 및 시행령 제 8 조¹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을 거쳐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시정요구'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KT 등 망사업자, 호스팅업체)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언은 '요구'이나, 행정기관이 발하는 처분으로서 준수율(이행율)이 약 98%에 달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규제이다.

나. 시정요구의 종류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¹⁰ 엄격한 법률상 의미의 '검열'은 사전 검열을 의미하나, 본 보고서상 '검열'은 행정기관이 정보의 '내용'을 살펴 심의하고 유통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넓은 의미의 검열을 의미한다.

¹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정보의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게시글(URL) 단위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
 - ② 접속차단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사업자(망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
 - ③ 이용해지 및 정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사이트, 블로그, ID 등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 ④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 이 중 ①~③은 해당 정보의 유통을 인터넷상에서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시정요구를 의미한다. (④의 방법은 전체 시정요구에서 약 1% 미만을 차지)

다. 심의 대상 정보 및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른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른 불법정보란, 음란물, 명예훼손, 협박·스토킹, 기술적 훼손, 영리목적 표시의무 미이행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정보를 말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시정요구 대상 범위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 38 호)에 따라, ‘불법정보’에 이르지 않은 정보라도 심의규정상 ‘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려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라. 절차 및 효과

심의대상 정보는 ‘일반인 신고’, ‘관계행정기관의 심의신청’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에 인지된다. 인지된 정보들은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여부가 심의·의결된다.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이하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지되고, 시정요구를 받은 서비스제공자 등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일정한 법적 구속력과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 등은 대부분 시정요구를 그대로 준수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게시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설치법 시행령 제 8 조 제 5 항)

2. 현황 및 분석¹²

가. 심의 건수, 시정요구 유형별 건수 및 비율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 심의 건수		140,421	158,073	211,187	91,853
시정요구	계	132,884	148,751	201,791	84,872
	삭제	24,581	27,650	35,709	15,499
	이용해지, 이용정지	10,031	9,821	8,422	2,617
	접속차단	97,095	111,008	157,451	66,659
	청소년유해표시	1,177	272	209	97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274	148	148	64
해당없음 등		7,096	9,174	9,248	6,917

표 10. 2014-20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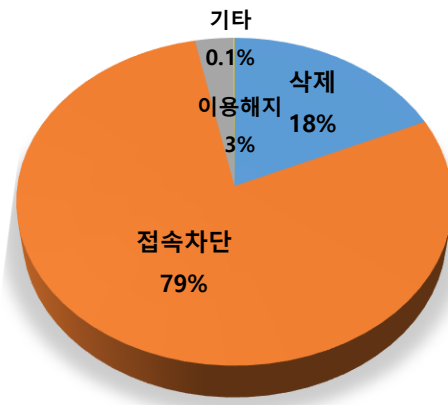
- 2017년에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동임기인 6월 12일까지 총 91,853건의 정보가 심의되었고, 하반기 이후로는 아예 통신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 84,872건 (92.4%)이 시정요구 되었고, 6,917건 (7.6%)만이 해당없음(정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유통 허용) 각하, 기각, 시정요구 철회, 시정요구 결정 취소로 결정되었다. 상반기만 총 9만 건 이상의 정보가 심의되었기 때문에 기간별 비율에 따른 심의량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 2017년 시정요구(84,872건) 중, '접속차단'은 66,659건(78.5%), '삭제'는 15,499건 (18.3%), '이용해지 등' 2,617건(3.1%), '기타(청소년유해표시관련)'는 97건(0.1%)을 차지하였다¹⁴.

¹² 아래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현황 통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기초한다. 동 위원회가 분류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분류 기준이 중복되거나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있어 수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며, 항목의 통일 등을 위해 일부 재구성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¹³ 단, 2017년 통계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만료인 6월 12일까지 활동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¹⁴ 각 시정요구 유형의 정의는 위 1. 나. '시정요구의 종류'를 참조

2017년 시정요구 결정유형별 비율



- 가장 많은 시정요구 유형은 총 시정요구 결정의 79%를 차지한 '접속차단'으로,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상의 정보가 심의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서버 내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혹은 이용해지 결정이 주로 내려진다.) '기타'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와 관련된 시정요구인데 이의 활용은 보통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나, 2015년 (0.2%)부터 더욱 줄었다. 이는 위원회가 '선정성 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만을 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인지 여부를 엄격히 심의하지 않고, 거의 삭제, 접속차단 등과 같이 성인의 접근도 차단하는 전면적 금지의 시정요구 결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14년 이후 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 만료(6월 12일) 이후, 제 4기 위원회가 2018년 1월 30일야 출범한 까닭에 연간 시정요구 수 추세 분석에는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매주 2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1회당 약 2,000여건 심의, 한 달 약 17,000건의 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나.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유형¹⁵

¹⁵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및 형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율되는 내용 및 이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고, 유해정보란 불법성 없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권리침해 정보는 사인의 권리(초상권, 명예훼손 등)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주로 사인의 신고로 심의대상이 되며, 초상권 침해 정보는 유출된 사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불법	음란·성매매	49,737	37.4%	50,695	34.1%	81,898	40.6%	30,200	35.6%
	사행성	45,800	34.5%	50,399	33.9%	53,448	26.5%	21,545	25.4%
	불법식·의약품	20,160	15.2%	26,071	17.5%	35,920	17.8%	18,556	22.0%
	마약류 ¹⁶	1,725	1.3%	-	-	-	-	-	-
	불법금융	1,694	1.3%	1,620	1.1%	2,234	1.1%	1,349	1.6%
	개인정보침해	2,085	1.6%	1,860	1.3%	2,011	1.0%	524	0.6%
	불법명의거래	1,959	1.5%	958	0.6%	5,586	2.8%	1,820	2.1%
	문서위조	1,961	1.5%	1,973	1.3%	1,493	0.7%	1,225	1.4%
	국가보안법위반	1,137	0.9%	1,836	1.2%	2,570	1.3%	1,662	2.0%
	지적재산권 침해	-	-	862	0.6%	956	0.5%	976	1.1%
	기타	3,541	2.7%	4,916	3.3%	4,274	2%	1,798	2.1%
	소계	129,799	97.7%	141,190	94.9%	190,390	94.3%	79,655	93.9%
	유해	차별, 비하, 역사왜곡	705	0.5%	891	0.6%	2,455	1.2%	1,166
욕설		194	0.1%	549	0.4%	734	0.4%	774	0.9%
폭력, 잔혹, 혐오		101	0.1%	535	0.4%	313	0.2%	109	0.1%
기타		0	0.0%	207	0.1%	116	0.1%	0	0.0%
소계		1,000	0.8%	2,182	1.5%	3,618	1.9%	2,049	2.4%
권리 침해	초상권	1,706	1.3%	3,768	2.5%	7,557	3.7%	3,129	3.7%
	명예훼손 등	379	0.3%	1,611	1.1%	226	0.1%	39	0.0%
	소계	2,085	1.6%	5,379	3.6%	7,783	3.8%	3,168	3.7%
합계	132,884	100.0%	148,751	100.0%	201,791	100%	84,8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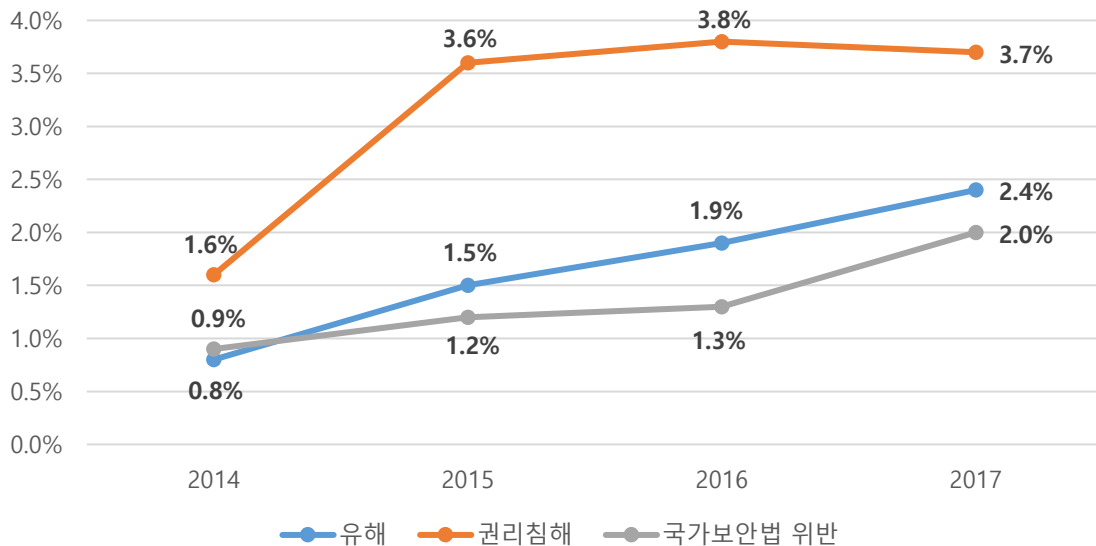
표 11. 2014-2017 통신심의 시정요구 대상 정보 유형별 현황

- 2017년,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79,655 건으로 93.9%, 유해정보는 2,049 건으로 2.4%, 권리침해정보는 3,168 건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음란·성매매 정보가 30,200 건 (35.6%), 사행성 정보는 21,545 (25.4%),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18,556 (22.0%)으로, 이 세 개의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¹⁶ 2015년부터 마약류 통계는 불법식·의약품에 포함되었다.

- 국가보안법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이 2014 년 전체의 0.8%, 2015 년 1.2%, 2016 년 1.3%, 2017 년 2.0%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주요신고기관인 국정원, 경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 역시 2014 년 전체의 0.8%, 2015 년 1.5%, 2016 년 1.9%, 2017 년 2.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증가추세이나, 명예훼손성 정보 비중은 2015 년 이후 줄어들고 있어, 초상권 침해 정보(주로 유출된 사인의 성행위 동영상)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 권리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비율 변화



-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4 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현재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뚜렷한 기준에 의한 규제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 인지방법별, 관계기관별 심의 요청 현황¹⁷

¹⁷ 시정요구 건수가 아닌 심의 건수 기준임.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민원	50,892	36.2%	44,565	28.2%	76,207	36.1%	33,007	35.9%
모니터링	33,944	24.2%	36,447	23.1%	39,270	18.6%	10,384	11.3%
관계기관 요청	55,585	39.6%	77,061	48.8%	95,710	45.3%	48,462	52.8%
계	140,421	100%	158,073	100%	211,187	100%	91,853	100%

표 12. 2014-2017 통신심의 인지방법별 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17,163	24,079	27,988	14,417
스포츠토토	21,114	24,577	-	8,336
케이토토	-	9,047	18,53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455	6,426	16,702	7,993
국민체육진흥공단	-	1,875	834	121
방송통신위원회*	1,137	1,838	2,570	1,696
경찰청	459	2,668	1,739	108
검찰	-	248	1,037	1,876
금융감독원	1,835	1,807	1,584	503
한국마사회	925	1,198	2,809	1,32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542	232	243	100
문화체육관광부	-	507	420	778
지방자치단체	5,179	1,682	19,775	9,777
기타	1,776	877	1,477	1,437
계	55,585	77,061	95,710	48,462

표 13. 2014-2017 통신심의 관계기관 심의요청 현황¹⁸

- 2017 년 기준, 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인지는 관계기관 요청이 48,462 건 (52.8%)으로 가장 많고, 그 뒤 민원 33,007 건 (35.9%), 모니터링 10,384 건 (11.3%) 순이다.

¹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로 타 기관의 신고를 접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 신고 기관은 국정원, 경찰 등 다양하다.



- 관계기관 요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포츠 토트(케이토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불법 식·의약품과, 사행성 정보들은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 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신고 9,777 건 중 대다수(9,752 건, 99.7%)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통한 신고로, 서울시가 문제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민의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인터넷 검열 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인터넷 정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검열기관의 규제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관련 정책설계에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5 년부터 관계기관 요청 건수가 급증하여 2017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각종 기관들이 인터넷 정보 규율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시정요구 이행을 및 이의신청 등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포털	99.7%	99.8%	99.5%	98.8%
망사업자	100%	100%	100%	100%
기타	97.9%	88.3%	87.7%	80.3%

표 15. 2014-2017 시정요구 이행율

- 해외 서버 사이트 차단을 행하고 있는 망사업자(KT 등)들의 이행율은 예외 없이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포털 사업자들의 이행율도 거의 100%이다. 시정요구는 문언상 '요구'이지만 사실상 커다란 강제력을 가진 처분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3. 주요 이슈 및 최신 문제 사례 ¹⁹ 20

가. 유해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1) 쟁점

행정청에 의한 표현물 심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 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표현물 심의 권한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폭력성', '잔혹성',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 주관적·추상적 개념들이 기준이 되어 인터넷상 각종 표현물이 심의되고 이에 대한 삭제, 차단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유해'정보는 비록 바람직하고 유익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용적으로 일응?? 유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 안에 내재된 인식과 사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국민들의 평가와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일방향적 소통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선택에 따라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해성을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유해정보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규제방식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성인의 접근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성인의 알 권리 수준을 청소년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¹⁹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3기 위원회 임기 만료인 6월 12일까지만 수행되었고, 4기 위원회가 발족한 2018년 2월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간 심의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따라서 문제사례 양도 다소 적었다. 다만, 본 보고서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상반기에만 9만 건 이상 심의되었기 때문에 기간별 심의량은 전년과 유사했다. 각 심의의 회의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소위원회 회의-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회의인 경우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

http://www.kocsc.or.kr/04_know/communication_SCommittee_List.php

²⁰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이전 문제 사례들은 한국 인터넷 투명성보고서 2015, 2016, 2017년판 참조

어서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정보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삭제·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어,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이 '유해'한 것인지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가치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최신 문제 사례

① 역사 왜곡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웹사이트 게시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한 사례가 있었다(2018년 제18차 다수의견). 당시 삭제의결의 근거로는 지속적으로 음해 및 왜곡되고 있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2018년 3월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존재가 거론되었다. 이 삭제의결은 게시자의 이의신청으로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재론되었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재론에서 심의위원들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음해 및 왜곡을 통한 혐오발언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이 사례는 유해정보 심의를 통한 인터넷 정보 규제에서 침해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슈와 더불어, 국내에서 최근 활발히 토론되고 있는 혐오표현 이슈를 제기하는 이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근거를 확충해 심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② 차별·비하

- '차별, 비하'의 심의규정은 주로 여성, 특정 지역민,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심의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국적, 지역 등에 의하여 분류된 특정집단에 대해 비하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에 대한 적대적, 위협적, 비하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심의한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반적 여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는 글들이 심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여성혐오와 비하에 대응해 남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요청과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염려가 없는 표현물까지 본 심의규정



을 이유로 심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혐오표현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심의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심의 범주와 규제권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특정 정보'이다. 따라서 정보 내용 그 자체에 불법이 있는지 혹은 표현 자체로 불법행위를 고의적, 구체적으로 교사, 방조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단순히 그 정보를 지득한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웹사이트 내에 불법정보가 다수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삭제, 차단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나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 같은 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계정 혹은 사이트 내에 불법정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각 정보들을 일일이 특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이나 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일부 불법 정보 때문에 해당 계정이나 사이트 내의 합법적인 게시물마저 모두 차단되어 필연적으로 과잉 규제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 그간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으나, 심의과정 중에는 심심치 않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거나, 문제글의 작성자를 찾아내서 심의에 적용해야 한다는 정보 심의 권한을 벗어난 논의들이 심의 석상에서 오가고 있으며, 신중한 심의보다는 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²¹

다.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물 심의의 문제

²¹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2차 심의에서 디시인사이드 웹사이트 내 게시물 심의 중,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이트 관리 직원을 통해 해당글의 작성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심의권한 밖의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1) 쟁점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상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 구성원이 법전문가가 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은 정부 권력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의 적용과 불법 여부를 판단은 독립한 사법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차단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표현물의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주제의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다른 국가보안법 조항들과 달리 물리적 행위(act)가 아닌 언사(speech) 자체를 범죄시키고 있어 UN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²²
- 또한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주장과 사상 등을 수용·비판·여과해내는 사회체제의 건전성과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 체제나 사상에 대한 찬양적 표현만으로 국가의 기본질서가 함부로 위협받지 않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고 판시한 바 있다.
- 따라서 본 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남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공격적인 표현의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단순한 찬양적 표현이나 방어적인 표현들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적, 선동적 표현이 없이 단순히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거나 정치권력을 찬양·미화하는 표현의 게시글들도 다수 삭제하고 있다.

²² UN Human Rights Committee, Kim v Republic of Korea (574/94)

라. 명예훼손적 표현물의 심의의 문제

1) 쟁점

- 우리 형법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고발성 글이나 비판적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익을 위한'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들이다. 명예훼손과 같이 불법성 판단이 명백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고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특히 공직자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규제 권한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통제하는 데에 남용할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글이나 소비자 불만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함부로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일한 글을 여러 군데 게시하였다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더 강하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마. '음란' 정보 심의의 문제

1) 쟁점

- 판례는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기준 역시 어떠한 표현물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음란물인지를 구별하기에는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좌우 될 위험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음란물의 판단기준 역시 엄격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심의 대상 안건으로는 아무런 성적 서사나 성행위 암시가 없는 단순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나, 문학작품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서사가 담겨 있는 소설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에도 '음란물'로 취급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표현물을 취사선택하여 접근할 자유마저 제약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심의 사례

1) 쟁점

-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다. 즉, 인터넷 개인방송은 개인의 표현물이고 대부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고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2) 최신 문제 사례

- 지난해 음란성을 이유로 심의 건의되었으나 시간의 경과로 이미 문제의 방송을 해당 URL을 통해 시청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이미 없어진 문제의 방송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URL 사용을 제한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상 토론이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이미 접속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규제가 효용이 없다는 입장과 유사 사례의 유통방지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결과, 해당 방송진행자에 대한 이용정지와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정기간 이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 9차 심의)

- 2018년 7월, 방심위 통신소위는 남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 송출(일명 '흑방')을 이유로 해당 음성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한 진행자들(BJ)에게 6개월의 이용정지를 시정요구 의결했다. 해당 진행자들은 문제의 음성이 실제 성행위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향이었음을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주장했으나, 방심위는 자극적 방송 진행과 재발 및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2018년 제38차). 해당 BJ의 채널은 이미 성인 인증을 통해서 접속한 성인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채널이었으며, 문제 방송의 불법여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명확한 심의 권한과 그 적절한 사용기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심의 투명성 문제

-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는 심의와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넷 정보의 삭제, 차단, 계정이용정지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준수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터넷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소위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방심위는 특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사법권과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인터넷 통신 상 정보 유통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라는 권고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소위 위원들은 종종 수사기관의 수사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사무국에 요구하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 방심위 통신소위는 원칙적으로 특정정보수준(URL 수준)에서 심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 등의 매체와 다른 인터넷 통신기술의 특수한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사업자나 플랫폼에 대한 심의/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종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 규제권한을 강화하려는 위 같은 모습과 상반되게, 심의 이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무국이나 신고기관 의견에 의존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난다.
- 전문성 뿐 아니라 공적 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소양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여성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듣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이 횡행하고, 근거없는 선입견에 기반해 심의대상이 되는 인터넷 이용자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
- 이러한 심의위원회 자질과 소양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의 공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회의공개원칙을 통해 심의위원회 회의 현장방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의에 사용되는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는 방청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을 온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편집 녹화물이나 녹음물을 공개하거나 촬영/녹음을 거의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의 편집이 가해진 회의록이 추후 공개될 뿐이다.

V. 검열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현황: 제19대 대통령 선거

1. 개관

-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²³)
- 이 제도는 사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유통 차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검열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본 제도의 검열 대상인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표현은 정치적 표현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도 직결되어 있는만큼 특히 더욱 강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선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및 그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중앙 및 17개 지방선관위에 총 40,222건의 게시물 삭제요청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총 352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는 단 한 건으로 이조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아래는 한국인

²³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터넷투명성보고서 팀이 참여연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중앙 및 각 지방 선관위가 제기한 제19대 대선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및 그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2. 분석 및 통계

가. 삭제요청

- 2017년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앞선 18대 대선 당시보다 무려 4.6배 많은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가 있었다.²⁴

구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삭제요청	합계
제18대 대선	10	23	9	7,159	7,201
제19대 대선	42	7	73	40,222	40,344
증가수 (18대 대비 증가율, %)	32 (320)	16 (69.6)	64 (711)	33,063 (461.8)	33,143 (460.3)

- 중앙 및 각 지방 선관위에 접수된 제19대 선거 사이버선거범죄조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총 중앙 및 지방선관위는 42건의 고발과 7건의 수사의뢰, 1건의 이첩 및 71건의 경고를 조치하였다.

구분	조치 종류					합계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삭제요청	
허위사실공표	16	5	1	45	20,111	25,178
여론조사공표 및 보도 금지	2	-	-	2	12,083	12,087
후보자 비방	1	1	-	-	839	841
특정 지역 비하 및 모	1	-	-	-	428	429

²⁴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제19대 대통령선거총람> p.196



목						
기타	22	1	-	24	1,761	1,808
계	42	7	1	71	40,222	40,343

- 이 중 중앙선관위, 서울 등 17개 지방 선관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한 자료는 총 40,222건으로, 이 중 각 지방 선관위를 통해 접수된 삭제요청이 93.4%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삭제요청 사유는 허위사실 공표(62.4%),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30.0%), 후보자비방(17.64%), 특정 지역 비하 및 모욕(1.06%)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선관위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는 단 1건으로, 네이버 카페에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게시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위원회 구분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후보자 비방	특정 지 역 비하 및 모욕	기타	계
중앙	1,939	570	19	2	107	2,637
지방	37,585	23,172	820	11,513	426	1,654
합계	40,222	25,111	839	12,083	428	1,761

- 이러한 조치는 주로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 상 정보를 대상으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조치의 75.2%가 SNS 상 정보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 정보가 24.7%를 차지했다.

구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삭제요청	합계
인터넷 홈페이지	6	5	10	9,945	9,966
SNS	30	2	54	30,269	30,355
문자메시지	4	0	8	0	12
전자우편	0	0	1	0	1
유튜브	10	2	0	0	8
계	42	7	73	40,222	40,344



- 각 지역 선관위별 집계에서도 대부분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후보자비방 순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되었으나,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보다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사유를 이유로 더 많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위원회 구분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후보자 비방	특정 지 역 비하 및 모욕	기타	계
중앙	1,939	570	19	2	107	2,637
서울	3,759	1,129	70	-	233	5,191
부산	821	598	25	28	90	1,562
대구	1,649	855	63	45	32	2,644
인천	529	299	15	132	126	1,101
광주	777	168	61	-	1	2,007
대전	1,908	364	111	-	38	2,421
울산	365	629	3	10	15	1,022
세종	306	580	-	-	250	1,136
경기	5,206	1,012	23	-	368	6,609
강원	399	1,125	12	6	26	1,568
충북	1,029	1,305	82	4	177	2,597
충남	1,893	142	-	5	40	2,080
전북	889	811	56	39	16	1,811
전남	1,190	883	23	5	46	2,147
경북	849	330	177	2	14	1,372
경남	818	153	13	35	163	1,182
제주	785	130	86	115	19	1,135
합계	25,111	12,083	839	428	1,761	40,222

- 선거법상 각 후보자 캠프에서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이 제기한 정보차단 신청현황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재인 후보 측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정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 차단을 신청했고, 다음으로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 후보 순이었다. 네 명의 후보에 대한 총 삭제신청 352건 중 85.2%인



300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삭제 처리되었고, 13%인 46건에 대해서만 삭제되었다.

후보자명	신청현황			처리결과			
	접수일자	신청 건수	주요내용	삭제	비삭제	열람불가	합계
문재인	2017.02.16.	4	직계비속(아 들) 취업 특 혜 의혹	-	4	-	4
	2017.02.28.	2	직계존속(아 버지) 인민군 장교 의혹	2	-	-	2
	2017.03.05.	174	직계존속(아 버지) 인민군 장교 의혹 등	39	-	-	39
			엘시티 의혹 등	-	129	6	135
	2017.03.10.	29	세월호 의혹	-	29	-	29
소계		209	41	162	6	209	
홍준표	2017.03.19.	4	자유한국당 1 차 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	4	-	-	4
	2017.04.21.	1	홍준표 돼지 발정제 논란 관련 허위 사 실	-	1	-	1
	소계		5	4	1	-	5
안철수	2017.02.14.	123	군복무 사실, MB 정권 근 무경력 등	-	123	-	123
	소계		123	-	123	-	123
심상정	2017.04.30.	1	정치활동 관 련 후보자 비 방	-	1	-	1
	2017.05.01.	1	당내 성폭행	-	1	-	1



			문제 은폐 후 보자 비방				
2017.05.02.	1		허위사실 유포	-	1	-	1
2017.05.05.	1		정의당 포괄 임금제 적용 은 허위사실	1	-	-	1
2017.05.06.	5		당내 성폭행 문제은폐 후 보자 비방	-	5	-	5
2017.05.07.	5		직계비속(아 들) 귀족대안 학교 졸업 등	-	5	-	5
2017.05.08.	1		당내 성폭행 문제은폐 후 보자 비방	-	1	-	1
	소계		15	1	14	-	15
	합계		352	46	300	6	352

3. 문제 사례

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삭제

- 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실시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 후보와 정당의 당선을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조를 이유로 삭제된 사례에는 각 후보자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식을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촛불민심을 대변하고 적폐청산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가?'와 같은 설문조사) 이러한 경우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인가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나. 후보자에 대한 비판, 풍자도 '비방'으로 삭제

-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해석하여 삭제한 사례도 많았다. 후보의 공식 발언 및 행위를 재구성한 웹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이용해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게시물도 '비방'으로 보아 삭제되었다. 예를 들어 방송에 출연한 한 후보의 모습을 편집해 해당 후보의 과거 발언 등과 연결시켜 차이가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치매 의심 증상"이라고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이 후보자 비방죄로 인정되어 삭제요청 처리되었다.

다. 의혹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삭제요청에 대해서는 신중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등 네 명의 후보에 대한 총 삭제신청 352 건 중 85.2%인 300 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삭제 처리되었고, 13%인 46 건에 대해서만 삭제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전체의 59.3%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게시글(209 건)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 중 51 건(24.4%) 만이 삭제처리 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삭제요청(123 건, 전체의 34.9%)을 한 안철수 후보의 삭제요청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결론

- 2017년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삭제 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여론조사형태를 띤 정보에 대해 과도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시민들의 선거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막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선거법을 통해 제제할 수 있는 후보자 삭제처리요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신중히 판단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까지 선거법상 사이버선거법죄로 규정해 제재하는 풍토가 지속될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대의민주주의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선관위의 이러한 광범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선거법 제82조의4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I. 투명성 평가

1. 감시

가. 현재 정보공개 수준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²⁵ 및 통신비밀보호법상²⁶,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부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 정보를 제공한 현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식에 따라 연 2회(반기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위 세 개의 조치별로, 요청기관별(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요청건수 및 조치된 전화번호/계정 수, 통신수단별(유선/무선/인터넷 등) 요청건수를 공개하고 있고,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일반/긴급 유형 건수도 공개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총량만 공개 - 공개 항목의 구체화 필요

²⁵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²⁶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투명성보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도 운용에 대하여 대중들의 역감시·평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한 총 수치에 불과하여, 국가의 감시가 적절한 권한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 국민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감시 건별로 어떠한 사유(범죄혐의 등)로, 어떠한 서비스(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통신 내용, 접속기록, 신원정보, 통신 상대방 계정, 위치 등)이 어떠한 범위(대상 기간, 연장 횟수, 건당 정보제공된 계정 수 등)에서 제공되었는지, 또한 일반/긴급 유형, 기소·유죄판결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도 알 수 있어야 한다.

2)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의 미공개

- 또한 무엇보다 통신의 내용, 내역, 신원정보까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통한 통신 감시 현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으로 보이며 그 양도 무척 방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가지 통신 감시 제도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는 바, 이들을 망라하는 효과를 가지는 통신사 압수·수색 현황에 대해서도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위 문제 사례에서 보았듯 압수·수색의 과잉성이 의심되는 만큼,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앞으로 반드시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3) 감시 당사자에 대한 부실 통지

- 감시의 직접적 대상인 당사자(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 문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감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제공,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 집행에 대한 통지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⁷ 그러나 모든 형사적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집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의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기소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감시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

²⁷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2, 제9조의3, 제13조의3



해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행 종료시를 기준으로 피감시자에게 통지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또한 심지어 실제 조치 후 통지율이 38.5%에 그치고 있다.²⁸ 피감시자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시 당사자들은 감시를 받고도 이를 알 방법이 없다.
- 나아가 통신자료제공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수사기관 어느 쪽도 감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²⁹

2. 검열

가. 현재 정보공개 수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 유형별 건수와 대강의 사유(도박, 불법식의약품, 음란·성매매, 권리침해, 기타로 구분)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3년마다(심의위원회 1회기) 백서를 발간하여 더 구체화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심의회의도 신청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더 구체적인 현황도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의자료의 미공개 및 회의내용을 온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편집 녹화물이나 녹음물 미공개는 아쉬운 점이다. 또한, 그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회의 촬영/녹음에 대해서도 대부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현황에 대하여 사전적,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없으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모든 삭제 명령에 대한 각 건별 자료를 공개하였다.

²⁸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받은 사람 절반도 안돼..." (2014. 10. 19. 정청래 의원실 보도자료)

²⁹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 측에 문의를 하면 비로소 이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종래 이를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으나, 2015. 1. 19. 이통사가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는 판결의 취지대로 통신자료제공을 통한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심의 건별 현황 데이터 공개 필요

- 통신심의 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심의 대상 정보 건별로 문제내용, 정보유형, 서비스제공자, URL(일부 비공개), 인지방법, 적용조항을 알 수 있는 회의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심의 회의장에서도 모든 심의대상정보의 내용을 다 살피지 않고 정보 유형별로 대표적인 건의 정보 내용만 검토하거나, 전체 정보 내용 중 문제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청하거나 회의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적, 수동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제도 운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2) 게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통지 미이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당사자는 정보의 게시자임에도, 시정요구의 상대방이 서비스제공자라는 이유로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방심위의 시정요구시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의 통지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2항 및 제6항)이 2015. 1. 20.부터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본 법률의 예외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사전의견진술 기회 부여의 경우 '법리적 논쟁, 사회적 논란, 이해관계자간 의견충돌 등이 예견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사무처 의견을 검토하고 의견진술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음란, 성매매, 도박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정심의기간이 7일로 한정되어 있는 정보 등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권리침해(명예훼손 등) 정보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시정요구를 포함한 모든 권익제한·의무부과적 행



정치분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원칙으로서, 모든 시정요구 대상 정보의 게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는 것이다. 개정법상으로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규정(설치법 제25조 제2항 단서)되어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특수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형량화하여 선정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는 별개로, 개정법(설치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사후 통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 규정도 없으므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당사자인 게시자에게 사후 통지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명령 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Ⅶ. 맺음말

인터넷 감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한 총 수치에 불과하고, 모든 유형의 정보를 중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현황에 대하여는 전혀 공개하고 있는 바가 없어 사업자들의 투명성보고서를 기초로 한 분석이 필요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투명성 수준으로는 감시 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투명성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은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대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압수수색 현황은 전년대비 15배에 달할 만큼 폭증해, 수사기관의 포괄적, 대량적 감시 관행이 유지 수준을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거의 무제한적인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 방식이 인터넷 감시의 주요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공권력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수준은 감시 부분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지만, 심의 건수의 증가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검열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검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그에 비해 심의과정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회의자료의 제공이나 미편집 회의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제도는 과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물까지 검열해 과도하게 임시조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제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이버 게시물 삭제 현황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알 권리를 위축시켜 대의민주주의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선관위에 부여된 광범위한 단속 권한의 조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검열과 감시가 인터넷상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주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및 이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감시·검열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활동인 만큼, 되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비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보다, 보다 높은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발전적 토론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 <끝>



• 데이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1년~2013년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상반기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하반기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상반기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하반기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상반기,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종류별 제공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 등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인터넷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



공 등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네이버 투명성보고서 (<https://nid.naver.com/user2/privacycenter/info.nhn?m=viewStatistics>)
-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http://privacy.kakaocorp.com/transparency/report/request>)
- 밴드(캠프모바일) 투명성보고서
(<http://www.campmobile.com/band/privacyCenter/transparency>)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년 ~ 2014년 상반기 연도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1. 5. ~ 2014. 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선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현황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삭제요청 처리한 인터넷게시물 건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에 근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의신청한 현황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버선거범죄조치 실적 상세내역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 상기 데이터 및 더욱 자세한 데이터는 <http://transparency.or.kr>에서 확인 가능